

**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**(제15조제1항 관련)

| 기술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검사시설 및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기환경기사 1명<br>악취분석요원 1명<br>악취판정요원 5명 | 1. 공기희석관능 실험실<br>2. 지정악취물질 실험실<br>3.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<br>4. 악취희석장비 1벌<br>5. 악취농축장비(필요한 측정·분석장비별) 1벌<br>6. 지정악취물질을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·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각 1벌 |

비고

- 대기환경기사는 다음의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  -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공무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
  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
  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
  -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악취검사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악취분석요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.
  - 대기환경기사, 화학분석기능사, 환경기능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
  - 국공립연구기관의 대기분야 실험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
  -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시험·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
  -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
- 악취판정요원은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악취판정요원 선정검사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.
- 여러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.
- 지정악취물질을 측정·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.